『하도급 관련업체 공정거래 교육』 실시

제조 및 건설업체 등 하도급관련 원사업자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하도급법 및 시행령 주요내용과 그 운용에 관한 「하도급 관련업체 공정거래 교육」이 지난 6. 25(금) 사회복지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관련업체 임직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본 연합회(회장 김 용, www.kfcf.or.kr)가 주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원한 『하도급 관련업체 공정거래 교육』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1과 조용광 과장은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 보완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벌점감점, 과징금 감면, 현장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시행중에 있고 금년에는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현금성 결제수단의 사용을 적극 유도하여 현금성 결제비율이 100%인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서면실태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 최근 개정된 하도급법 및 시행령 주요내용과 법의 운용 및 위반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관련고시 및 지침의 주요 내용, 하도급법 위반 주요 사례 및 해설 등을 중심으로 교육하였다.

▶▶▶질의/응답

질의 공정위 하도급거래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양도 방대하고, 내용 또한 유통업뿐만 아니라 건설업을 포함하고 있어 너무 포괄적이다. 실무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하도급거래계약서를 만들어 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여부?

응답 하도급거래표준계약서의 중요한 조항이나 문구를 넣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예시하는 것이지 표준계약서만을 가지고 계약을 맺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업체의 특성에 맞게 계약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질의 신고 위반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신고사항만을 조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조사하는 것인지 여부와 과징금 산정이 건벌 산정인지 아니면 전체 산정인지 여부?

응답 직권실태조사는 신고사항뿐만 아니라 토목 또는 건설분야 전체를 조사한다. 우선 신고내역만을 조사하지만, 조사과정중에 신고자가 계속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범위가 조금씩 늘어나게 된다. 과징금은 하도급대금 전체에 대하여 산정한다.

가맹본부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교육 실시

본 연합회는 가맹본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하고 자율적인 경쟁풍토 조성을 위해 지난 6월 29일(화) 사회복지회관 대회의실(마포구 공덕동 소재)에서 가맹본부 임직원 6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제1차 가맹사업본부 임직원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탁으로 실시한 교육에서 가맹사업거래과 박홍진 사무관은 2002년말 기준으로 국내 가맹사업의 시장규모가 약45조원, 가맹본부 1천600여개, 가맹점 12만여개로 국민경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가맹사업 거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에 따라 법의 제정목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가맹사업법의 기본 목적이 가맹사업거래의 촉진을 통해 유통산업 발전,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는 것"이라며 이러한 인식하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장애요인의 제거를 위해서 엄격히 법집행을 하고 가맹사업거래 당사자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은 최소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 질서의 한 축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향후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한 특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보다 구체화하고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질의/응답

질의 정보공개서를 수정 및 갱신 후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에게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응답 정보공개서의 제공이 수정 및 갱신의 목적이므로 정보공개서를 수정 및 갱신하여 이를 제공해야 한다. 제공의 방법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질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작성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현재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이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

응답 외식업, 소매업 등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 및 업태부터 표준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다.

제5회 공정거래 자율준수포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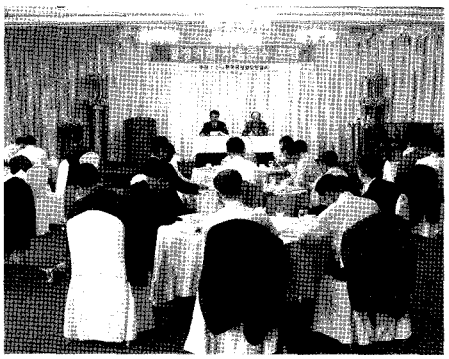

본 연합회는 7월 1일(목) 외교센타 12층 리더스클럽에서 두산, 오비맥주, 포스코건설 등 기업의 자율준수관리자 및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공정거래 자율준수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남광수 하도급 국장은 작년 12월말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기반 구축방안」을 마련하여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최근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방지에 중점을 두고 3~5개 업종을 중심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금성결제 촉진을 위해 현금성결제가 100%이고 법위반이 없는 업체에 대해 조사면제, 포상, 세액공제 범위 확대(결제기간 : 30일→60일)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원사업자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의 동시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하도급법 적용범위를 서비스분야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포럼(CP Forum) 참석기업

기아자동차, 대구백화점, 대림산업, 대림I&S, 동양제철화학, 두산, 두산중공업, 메가마트, 법무법인 광장, 삼성전자, 삼성카드, 삼성화재, 신세계건설, 신세계백화점, 앨트웰, 오리콤, 오비맥주, 와이더덴닷컴, 웅진식품, 창원특수강, 포스에이씨, 포스코건설, 한국암웨이, 한진, 현대자동차, 현대하이스코, 현대해상, CJ홈쇼핑, KT&G, LG전자, LG칼텍스정유, LG CNS, SK(이상 가나다 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제28차 조정회의 개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제조, 수리 및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연합회 내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김 용 위원장 및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 6월 29일 하도급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하였다. 조정회의에 상정된 주요 분쟁사안과 그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다.

▣ 조정불개시(반려)

▶ 벽산엔지니어링(주) 등 2개 업체에 대한 분쟁 건

- 수급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취하서를 제출한 후 원사업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재신고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취하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당 협의회로 조정의뢰하여 조정불개시,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정을 불개시하고 신고서를 반려함.

▣ 조정종료(취하)

▶ (주)국제건설산업 등 14개 업체에 대한 분쟁 건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중재로 양당사자간 합의후 신고인의 신고취하서 제출로 조정절차를 종료함.

▣ 조정성립(합의)

▶ (주)비티씨정보통신 등 4개 업체에 대한 분쟁 건

- 양당사자가 합의하고 조정회의에서 의결되어 조정절차를 종료함.

▣ 조정불성립

▶ (주)우석종합건설 등 8개 업체에 대한 분쟁건

- 양당사자의 의견 상이, 피신고인이 조정안을 불수락, 피신고인이 출석요구에 불응, 피신고인 부도에 따른 자금력 부족 등의 사유로 조정이 불성립 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 사건을 이첩.

▣ 사건처리현황(2004. 1. 1~6. 30)

구 분	계	조정불성립	조정성립(합의)	신고취하	불개시
제 조	21	5	2	12	2
건 설	31	9	2	17	3
계	52	14	4	29	5